『MICE관광 산업체 - 부산관광고등학교』“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안)

2025. 4.

부산관광고등학교
BUSAN TOURISM HIGH SCHOOL

『MICE관광 산업체 - 부산관광고등학교』"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계획(안)

부산 MICE관광 및 외식조리 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학교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 협력함으로써 부산 지역형 MICE관광·외식조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상호 교육과정 공동개발, 현장실습 지원, 인턴 및 취업연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업무협약 개요

□ 협약기관 : 부산관광고등학교 현황

► 학교 연혁

2007년 3월 관광특성화고 부산관광고등학교로 개편 (관광컨벤션과 3학급, 관광외식조리과 3학급, 문화관광콘텐츠과 3학급)
2010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 한식 세계화 특성화과 선정
2011년 3월 학과개편 (관광컨벤션과 3학급, 관광홍보이벤트과 1학급, 한식조리과 4학급)
2011년 7월 학칙 변경에 의한 학과 개편 - 관광컨벤션과 4학급, 한식조리과 4학급
2022년 3월 학과개편 (관광컨벤션과 3학급, 한식조리과 3학급, 카페베이커리과 2학급)
2024년 3월 1일 제10대 교장 정정부 취임
2025년 3월 3일 학과개편 (글로벌관광과 3학급, 한식조리과 3학급, 카페베이커리과 2학급)
2025년 3월 3일 학반개편 (글로벌관광과 중 컨벤션기획사반 신설)

► 학과현황

글로벌 관광과(180명)	한식조리과(189명)	카페베이커리과(125명)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컨벤션기획사전공 호텔식음료전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한식글로벌전공 호텔외식전공 제과제빵전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양식전공)	카페베이커리창업 호텔 및 외식산업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 학교 주요 사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식음료서비스 / 제과 / 서양조리)
- K-MOVE 해외취업 사업 운영 (싱가포르 매년 20명, 일본 10명, 대만등)
- 지역혁신지구 사업 참여 (호텔 및 외식조리분야)

□ 업무협약 주요내용

○ **협약기간 : 5년** (2026.03~2030.12)

○ **주요협력 사업**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과정 공동개발 운영 지원
- MICE 관광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 실무 교육 확대
- MICE 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 협약 기관의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인적 · 물적) 교류 협력
- MICE 관광 분야 산업체 교원 연수 지원

○ **협약체결 :** 부사관광고등학교 교장 ↔ MICE관광 · 외식조리 분야 산업체 대표
↔ 지역 대학교

2 협약 체결 행사 계획

□ 일 시 : 2025.04.18(금), 11:00

□ 장 소 :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 대강당

□ 참석대상

○ **부산관광고등학교 :** 학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산학협력부장, 도제교육부장, 고교학점제부장, 직업진로부장, 학과부장

○ **MICE관광 기업체 및 대학교 :** 미정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0:30~11:00 (30′)	참가자 등록	
11:00~11:05 (5′)	개회, 참석인사 소개	
11:05~11:15 (10′)	대표기관 인사말씀	
11:15~11:25 (10′)	협약 주요내용 설명 및 업무협약서 서명	
11:25~11:30 (5′)	기념촬영 및 폐회	

첨 부 :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 1부. 끝.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

“부산관광고등학교”, **“(주)○○”**(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란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협력 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1. 학교의 미션 및 비전, 산학 융합 교육 계획과, 취업-성장-정주 지원을 통한 학생의 지역인재로서의 성장 계획 등을 담은 교육 플랜
2.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
3.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체험(실습) 및 산학협력교사 지원
4. 성과 관리 및 협약 이행 담보 방안

제4조(협력 범위) ① 교육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기타 협약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으로 본다.

제5조(행·재정적 지원) 각 협약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비밀 유지)

1.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1. 본 컨소시엄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은 '26.3. ~ '30.2.(5년)으로 한다.
2.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기간 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 기간 종결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이 갱신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노력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4월 18일

부산관광고등학교	지역 기업명
교 장	**사 장**
_____	_____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협약서

“부산관광고등학교”, **“○○대학교”**(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과 이해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란 지역 및 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협력 사항) 각 협약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다.

1. 학교의 미션 및 비전, 산학 융합 교육 계획과, 취업-성장-정주 지원을 통한 학생의 지역인재로서의 성장 계획 등을 담은 교육 플랜
2.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계획
3. 교육 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교직원 연수 지원
4. 후 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취업-성장-정주 지원
4. 성과 관리 및 협약 이행 담보 방안

제4조(협력 범위) ① 교육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기타 협약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으로 본다.

제5조(행·재정적 지원) 각 협약 기관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비밀 유지)

1. 각 협약기관은 업무 진행 시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며,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기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상대방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상호 간의 비밀 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신의성실) 각 협약기관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효력 발생 및 변경)

1. 본 협약은 협약기관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약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의 해석상 의견차가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1. 본 컨소시엄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기간은 '26.3. ~ '30.2.(5년)으로 한다.
2.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기간 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운영 기간 종결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컨소시엄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이 갱신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에 노력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04월 18일

부산관광고등학교

교 장

_____

지역 대학교명

총 장
(대학학장)

_____